

◆ 질의와 회신 ◆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 회계제도팀 제공 -

1. 설계서의 범위

【질 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서는(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라고 나타나 있으며 현장설명서는 입찰전 현장설명시에 배부 또는 열람하게 되어 있어 폐사에서는 현장설명시에 배부되어 받아온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단가설명서)를 설계서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함.

2. 단가산정 오류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 의】

기초금액 산정시 누락된 금액에 준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에 설계서에 물량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단가산정시 오류 산정된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3.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여부

【질의】

당사는 공사발주처와 공사도급자가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방식으로 계약체결한 배수지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회사로서, 실시설계당시에 지반조사를 하였으나 운영 중에 있는 기존 정수장 시설물 때문에 실제 배수지 구조물 위치에는 지반조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실시설계시에 기초지반 처리공법은 여러가지 공법이 다양하게 적용토록 설계된 경우에, 기초처리공종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여 설계도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였다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턴키공사 등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예규 제2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 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 등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증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4. 품셈적용의 오류가 설계변경 사유 해당여부

【질의】

2000년 1월 10일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는 동년 1월 26일 하였으며, 계약체결은 동년 3월 9일 하였음, 이에 설계 당시에는 99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였는 바, 2000년 건설표준품셈은 동년 1월 15일자로 발행되었으므로 특별인부 및 보통인부 산식에 적용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회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약체결되었다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5. 산출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시공중이 공사의 산출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하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 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상태 등으로 종합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6. 설계서 누락 등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총액단가 입찰로 ○○시와 '97.8.9 최초 계약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행중인 ○○대교 재가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 ① 우회도로의 교통시설물 직접공사비를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 기존도로를 횡단하는 암거 시공을 위해 우회도로를 시공하였으여, 우회도로에는 통과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직접공사비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 ②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안전점검비를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 현장의 『특별시방서』에 사후환경 영향조사 및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실시비용은 시행 후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목적물 물량내역서(직접공사비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간접공사비 : 항목별로 분개되었음)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 ③ 환경보전비(오탁방지막설치비) 및 폐기물(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처리비용의 설계반영 가능 여부
 - 제반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방법은 적격심사 자료제출시 처리방안을 제시하였고, 특별시방서에는 오탁방지막 설치방안 및 폐기물처리 방안이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의 관련공종인 기존교량 철거공은 최초 계약시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당 현장 1회 설계변경시 추가 계약되었으며, 추가계약시 기존교량철거비만 반영되었을 뿐 폐기물처리비용 및 오탁방지막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④ 방호벽, 중앙분리대, Fairing 및 낙교방지공의 도장공사비를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에는 도장에 대한 어떠한 표기, 시방사항이 없으며, 목적물 물량내역서에는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지 않고 총계약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⑤ 구조물용 가도 및 축도 설계변경 가능여부
 - 당 현장의 계약된 설계도면에 하행선에 가도를 설치하여 상·하행선 교량을 동시에 작업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하행선 교량시공 완료 후, 하행선으로 기존교량 통과차량을 통행시킨 후,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상행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 ⑥~⑦ 강교 가설용 가도설계변경시 가도설치 수량 및 홈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와 L옹벽 및 날개벽의 설계 반영 여부
- ⑧ 유심부(○○강)상부로 강교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계된 가설 공법이 육상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벤트를 육상에 설치 후 강교를 가설하여야 하나, 가벤트 설치위치가 유심부로서 설계공법대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유심부에 가도를 설치후 강교를 가설코자 하는 경우
- ⑨ 하행선 교대 시공을 위한 터파기 작업시 기존 도로부분의 붕괴로 인한 통과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L옹벽 및 날개벽을 시공하기 위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 신

(질의①에 대하여)

-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공사현장 내에 중장비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질의②에 대하여)

- 설계서의 하나인 『특별시방서』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실시비용은 시행 후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역시 설계서의 하나인 목적물물량내역서에 동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 다만, 실시비용은 시행 후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사후에 동 비용을 실비정산처리해야 할 것임.

(질의③에 대하여)

- 질의 ②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설계서의 하나인 특별시방서에 오타방지막 설치방안 및 폐기물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폐기물처리의 관련공종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함.

(질의④에 대하여)

-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표시되었다면 동 1식 단가 속에 도장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⑤에 대하여)

-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행선 작업용 가도를 현장여건상 설치해야 한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다만, 가도설치의 당위성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질의⑥~⑦에 대하여)

- 강교설치를 위해 당초 설계된 가설공법이 육상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벤트를 육상에 설치후 강교를 가설하여야 하나, 동 설계공법대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가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통과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대중앙부에 L옹벽 및 날개벽을 시공 후 하행선 교대작업을 시행코자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의 규정(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 가도 및 날개벽 등의 추가설치 당위성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7. 단가산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 1998년 10월 15일 ○○군과 ○○교량 가설공사를 설계금액 3,975,944, 000원인 공사를 3,565,431,670원으로 도급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산출내역서 내역 중 수중터파기(연암)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단가산출에는 인력품 적용을 보통암+경암(4~6m)을 기준으로 적용되었고, 현장실정은 수중터파기 연암(3~5m)으로 된 바
- 물량내역서 공종규격에 의하여 단가를 작성하였고, 설계단가 산출서에도 공종규격은 같았는데 공사계약특약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품셈적용을 잘못했다고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 물량 등을 잘못 계상한 때에 계약상대방에게 차액을 환수한다는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되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설계서(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및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

사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와 지침,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달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8.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상의 단위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회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계도면, 현장상태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판단할 사항임.

9.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방법

【질의】

도로개설공사의 부대공종인 방음벽설치 물량이 당초 130 경간이었으나 공사도중 60경간이 증가되어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적용을 함에 있어 당초 방음벽설치비가 1경간당 1,240천원(재료비 724, 경비 93, 노무비 422)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상의 적용은 노무비 422천원이 누락된 817천원으로 적용하여 입찰에 부함에 따라 계약되어 있는 바, 증가된 물량 60경간에 대하여는 포함한 당초 견적가격 1,240천원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총액입찰후 산출(설계)내역서에 누락이 있다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물량증가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 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1경간당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10. 예산과목이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질의】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9. 2001.02.10)제19조(설계변경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코자 하였으나 설계변경 전 당초 공사예산과목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예산과목이 상이한 경우의 처리 방법 및 관련 법률 또는 예규나 지침.

회 신

-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변경계약)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계약시 지출원인행위가 된 예산과목과 증액되려는 예산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 등의 절차를 밟아 변경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질의】

- ○ 입찰공고에 낙찰업체는 신기술 및 특허권자와 법적인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원본을 공사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신기술지정업체 및 특허공법 보유업체

- 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코자 하니 과도한 기술사용료지불 요구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몰수와 계약불이행 제재조치를 받는지 아니면 신기술 및 특허공법 보유자가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기술사용료의 범위는 공사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요구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과도한 기술사용료를 지불 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기술 보유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되지 않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범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임.

1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경감에 대하여

【질 의】

공사시행중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를 맞아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하도급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하였고 공사진행 중 민원발생이 전무하여 현재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기간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생각되는바, 귀 부의 의견과 제한기간 경감이 가능할 경우 경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을 국가 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감사유 및 기간은 발주처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또한 이 경우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을 1월 이상 되도록 해야 함.

13. 허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부정당업자 제재방법은

【질의】

적격심사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코자 하는바, 상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별표2의 1호 바목을 적용하여 1년 이상 2년 이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2호 마목을 적용하여 6월 이상 1년 미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제1호 바목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내용대로 적격심사 실적증명서류 일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낙찰된 경우라면 동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바목을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14. 부정당업체 제재후 이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당초계약자가 부도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빌주기관으로부터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후 연대보증회사에 보증 시공토록 하였으나 연대보증회사도 보증시공 중 경영악화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으며
- 연대보증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6개월은 과다하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경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회 신

-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면 동 처분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제3항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경감”은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이전에만 가능한 것임.

15.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질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하도급제한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
 - ①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여부 및 제재시기 및 청문절차 이행 여부
 - ②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당해 공사 준공 후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질의 ①과 같이 관련법령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근거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연대보증인은 계약 및 하자 등의 보증의무가 있으며, 연대보증인 변경은 동법제5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연대보증인등의 자격)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보증인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질의 ②와 같이 계약이 준공된 시점에서 연대보증인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증을 하기가 어려워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인 변경은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6. 부정당업자 제재시 시공중인 공사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질의】

시공사가 부도이후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중 계속 시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및 연도폐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기 시공사가 잔여분에 대한 계속 시공이 가능한지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영업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가 취소처분된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당해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속 시공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62조, 동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기 시공중인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17.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질의】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를 받았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경쟁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입찰)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일정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정당하게 낙찰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체결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내용, 입찰조건, 계약체결시 실익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